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11. 11 선고 2022가단243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2022. 10. 14.

판결 선고2022. 11. 11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1. 20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. 1. 26. 접수 제29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D 관리기관 E단체는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 일체를 원고와 체결한

채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2017. 12. 21.자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, 2017. 12. 27. C에게 이를 통지하였다.

주채무					9,824,380	12%	23,052,005
주채무					9,603,530	12%	22,533,826
주채무					23,351,234	12%	54,832,036
주채무					3,309,004	12%	8,663,559

주)손해금 : 손해금 및 위약금, 과태료, 미수보증료의 합산액임

나. C은 2021. 1. 20. 자녀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증여계약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2021. 1. 26. 피고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다.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C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,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1)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,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).

2)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

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3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부동산은 오로지 피고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인데, 영농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인 C 명의로 등기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,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홍주현

별지